

회사 분리

Q 현재 우리 회사를 분리 하려고 합니다. Agreement를 통해서 급여 지급을 기존의 A회사에서 모두 하고, 임금 및 이에 따른 Supporting 비용을 B 회사에 청구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급여 처리를 위한 External supplier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예정이며 금액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A 와 B에 대한 각각의 정산 가능)

1. 이런 상황에서, B 회사의 임금과 External supplier의 청구 금액 및, 현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대금을 어떻게 정산하면 되나요?
2. 임금은 인보이스
나머지 External supplier 금액은 A 회사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세금계산서 끊으려고 할 때, 4대 보험 등에 문제가 있나요?
3. 기존 회사에서 분사후, 분사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4. 사업자 등록증에 임금 용역 같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없어도 관계 없나요?

A 1. 회사 분리에 따라 기존회사에서 급여 지급하고 분리된 회사에 청구하는 거래 등의 대금 정산 방법 등은 세무회계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인사계약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2. 다만, 회사가 분리됐으므로 법률적으로 B소속 직원인데 A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여러 측면에서(노무, 세무 등)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무상증여 재원마련(중간배당)

Q 12월 결산법인이며, 정관상 중간배당 기준일은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입니다.

금번 당사의 주주 한명의 비상장주식 전부를 미성년자녀에게 무상증여하려고 하며 그 재원마련을 아래와 같이 할경우 상법상 문제될 여지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년 4월 경 : 2022년 결산귀속 정기배당은 하지 않음
2. 2023년 5월 경 : 미성년자녀에게 비상장주식 무상이전
3. 2023년 7월 경 : 중간배당 실시(중간배당 재원 유무 확인 후)
4. 2023년 8월 경 : 수증자인 미성년자녀의 중간배당금으로 증여세 납부

A ≡ 상법상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사회결의를 통해 진행하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고 상법상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철부산물(스크랩) 거래 시 대금지급관련 문의

Q ≡ 당사는 A사로부터 고철부산물을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입한 고철부산물에 대해 스크랩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당사가 A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어 받을대금과 스크랩매입금액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고철부산물의 매입대금은 스크랩계좌로 지급이 되지않는데, 스크랩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A ≡ 스크랩거래의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스크랩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고 받을 대금은 별도의 계좌로 받으셔야 가산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차 가정용 충전기 회계 계정 처리 문의

Q ≡ 당사에서 자율주행 관련 개발을 위해 아이오닉5 (전기차량)을 리스 중입니다. 차량 충전을 위한 가정용 충전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해당 비용을 소모품비와 차량유지비 중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 계정과목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귀사의 거래 행위에 맞는 타당한 계정을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되는데,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품목은 자산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충전기에 대해 소모품비(비용)나 차량유지비(비용)가 아닌 비품(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